

2000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(안)

의 안 번 호	31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 . 8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『전국자치복권』이 시장환경악화와 주식식 복권의 한계 등에 기인하여 수익금 확대조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기금 적립 목표액 조기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
- 기금적립 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5개 발행기관이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이벤트복권을 하반기에 전국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복 권 명 : (가칭) 슈퍼코리아자치복권
- 발행주체 :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
- 판매지역 : 전국
- 발행규모 : 400억원(추첨식)
- 1등 당첨금액 : 50억원(5개조 10억원씩)
- 액면금액 : 2,000원/4매 1세트

□ 발행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
- 지방자치법 제142조
-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(행정자치부령 제585호)

2000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계획서

1. 발행개요

- 복권명 : (가칭)슈퍼코리아자치복권
- 발행단체 : 충청북도(전국 16시·도 공동발행)
- 발행매수 : 20백만매(2,000원/4매1세트)
- 발행액 : 400억원

2. 세부 발행계획

(단위 : 백만원, 백만매)

발행형태	발행기간	발행회차	액면금액	발행매수	발행액	예상판매액	예상수익금
추첨식	2000년 하반기	1회	2,000원 (4매1세트)	20	40,000	32,000	8,174

3.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

- 발행주체 :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
- 판매지역 : 전국
- 1등 당첨금 : 50억원(5개조 10억원씩)
- 액면금액 : 2,000원(4매 1세트)

關聯 法令(발췌)

● 지방재정법 [법률 제4006호 전문개정, 1988.4.6]

- 제11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·예술·복지 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종류, 발행금액,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부터 3월로 하고,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- ③ 제1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

● 지방자치법 [제2절 행정협의회]

- 제14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협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
-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.

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[행정자치부령 제585호, 1993. 3. 3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한 승인기준과 그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복권발행의 승인기준)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에 대한 승인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.

제3조(복권발행의 승인절차)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9월 20일까지(다만, 행사기념복권 중 전년도에 복권발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6월 전까지) 복권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별지 제1호 서식의 복권발행계획서
 - 별지 제2호 서식의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용계획서
 - 최근 2년간 복권의 월별판매실적(2년이상 복권을 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 - 복권발행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서 사본
 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서 사본

② 시장,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, 이 경우 특별시장,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복권발행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자치복권의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31일까지, 행사기념 복권의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.

부록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[충청북도 고시 제1995-36호, 1995. 4. 7]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치복권발행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명칭) 협의회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고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의 2 번지 소재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에 둔다.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한다.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관리(조정)실장으로 하고, 임원으로 회장 1인,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되, 회장 및 부회장은 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감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② 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에 위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후임자가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 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④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감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계처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공제회에 위탁한 사무의 처리상황을 감사한다.

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계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직원을 둔다.

제6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

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한다
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

제7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복권발행관련사무의 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2.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등에 관한 사항
3.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기타 전국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

②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위임하거나,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제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한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 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실무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과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9조(협의방법등)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합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 협의회 구성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에는 참석 할 수 없다.

제10조(미합의사항 조정등) ①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협의회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②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

제11조(수익금의 관리운영 및 배분) ①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 판매액, 시군구수,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③ 행사기념복권을 당해행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판매수익금의 배분은 발행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(사무처리등)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관계공무원의 참석 및 의견 개진을 요청할 수 있다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무회계등)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

② 회장은 회계사무처리와 전국자치복권발행 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계사무처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